

제 459 호

1974. 9. 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75 호 :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징수조례	3
제 876 호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4

◎ 고 시

제 122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8
제 124 호 : 도시계획시설 (골용청사및도로) 결정 및지적승인	9
제 125 호 : 하천점용 (교량설치) 허가의실효	9
제 127 호 : 주택개발을위한사업신시제및변경 인가고시	10
제 129 호 : 사방지의지정	10
제 130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및도로) 지적승인 및지적일부변경	19
제 13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및지적 승인	19
제 132 호 : 주택개발을위한제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	2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70 호 :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21
제 171 호 : 환지에정지일부제척변경공고	21
제 174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 지정업체대체지정및지정번호 변경공고	22
제 176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자금지원요령개정	23
제 177 호 : 기존재개발사업지구무효공고	30
◎ 사 령	3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징수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75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 수입으로 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기준) 수수료는 다
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1. 수수료는 매립면허시공 기준으
로 매립면허를 받은자에 의하여
조성된 매립지 가액에 1,000 분
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권호의 매립지 가액은 매립한
공유수면의 최인근지중 매립목적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

가는 매립면허일 기준으로 하여
등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토지대장상 서로 지목은 같
으나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
가 매립할 공유수면의 최인근지로
되어있는 때에는 그중에서 최저
등급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인근지중 매립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토지가
없을 때에는 최저 시가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으로 징수한다.

②수수료의 납부액, 납부기한 및 납
부장소는 면허 조건으로 정한다.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면허취소 또
는 변경등의 사유로 인멸 안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의 뒤일) 시장은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공유수면점용토등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876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토
등 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요금의 기준) ①요금은 별
표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사
등 공유수면의 산출물은 지방재정
법 제 52 조 및 동법시행령제 58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 3 조 (요금의 산정방법) 요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요금은 연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동
이라 한다)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하고 1개월 미만
의 경우 16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이하는 월액의 반액으로
한다.

2.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
지의 가액은 등록세법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
지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
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점용동의 기간이 1년 이상의 경
우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
가표준액에 의한다.

3. 점용동의 산정에 있어 1명 또
는 1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명 또는 1로 한다.

제 4 조 (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공유
수면의 점용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점용등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요금등은 지방세법 제 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 조 (요금의 징수시기) ①요금은 일시에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농경물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기타 그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농경물 목적으로 하는 점용등: 농지세의 납기
- 2. 기타 성격상 선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 시장이 정하는 - 납기

③제 1항 단서 및 제 2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 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요금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와 시장이 특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리월분 이후의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 7 조 (허가없이 점용등을 할때) 공유수면의 점용등을 허가 없이한 경우에는 당초 점용등을 표시한 때까지 소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등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 8 조 (준용)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9 조 (징수의 위임)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 10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요 금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토지의 점용	<p>1.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전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p>2. 식물의 재식(농업재와) 및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전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40</p> <p>3.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전용면적에 대하여 가) 간류농지제 해당 농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 기준수확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울류농지제 해당 농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40</p> <p>4.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액, 평당 10원 다만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4 항제 1 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2)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p>영업세 과세표준액(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p>

구 분	산 정 기 준
(3) 유수의 점용	1. 수차론 목적으로 하는 점용 및 인수 연액. 점용면적 평당 100원과 절구 1개당 300 원의 합산액 2. 인 수 (지하수 채취의 경우 포함) (가) 공업용수 : 월액 m^3/Sec 당 20,000 원 (나) 농업용수 : 연액 m^3/Sec 당 16,000 원 3. 배 수 (주수) (가) 공업용수 : 월액 m^3/Sec 당 15,000 원 (나) 기타용수 : 연액 m^3/Sec 당 10,000 원 4. 선박운전을 위한 이용 수덕예상액의 100분의 30 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5. 기타 점용 등 전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
(4) 산출물의 채취	1. 토석, 사력의 채취 생산지 시가액상 채취비와 상차비등 제외한 금액 의 100분의 70 2.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하지 않은 것은 전호, 점용이 수반되 는 것은 제 1항 제 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5) 전 주	3. 책징 : 평당 20 원 연액, 단주는 주당 150 원 H주, 탐주는 주당 300 원
(6) 기타 점용 등	전 각항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2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71.4.7) 로 지정고시된 도심부내 상업지역과 건설부고시 제 124 호 (72.4.11) 로 지정고시된 주거지역 및 건설부고시 제 216 호 (73.6.5) 로 지정고시된 상업지역일부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첨부 1.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 8. 2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 거 지 역	성	동구성수동 1가 385 의 376 일대	78,400	㎡		
소 계			78,400	㎡		
상 업 지 역	중	구회현동 2가 10 의 1 일대	7,700	㎡		
상 업 지 역	중	구, 종로구 도심부지역	6,271,600	㎡		
소 계			6,279,300	㎡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124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 및도로)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청사 및도로) 을 다음과같이 시설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 가. 공용청사결정조서

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8.30.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공용청사용지	서대문구서소문동 38 의 9 필지		4,250		법원정사(검찰청)	

나. 노 선 조 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 도로	2		8	65 m	태평로 2 가	서소문동 36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25 호

하천점용 (교량설치) 허가실효

하천법제 70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 에 의하여 하천점용 (교량설치) 허가 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1974. 8.31.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허가장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 동 5번지앞 하천 (푸계천상류)

2. 허가규모 : 길이 24미터, 폭 5.5 미터

3. 허가목적 : 교량설치후 통로사용

4. 실효일자 : 74. 6.26

5. 수허가자의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신영동 219-11 서성원

6. 실효사유 : 학순공기란내공사미착공

◎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주택개발을 위한 사업
실시계획및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으
로 지정된 명륜의 1 구역 (신규) 및
고척구역 (사업계획변경)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고시제 294 호 (74.8.30) 및

제 280 호 (74.8.21) 로 사업실시
계획 및 변경인가되었으므로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개
량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5.

서울특별시장

3. 사업고시내역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명륜의 3 구역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사업지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고 시 종 별
명륜구역	종로구명륜동, 와봉동 각 1부	98,010㎡	사업실시계획인가
한남 1 구역	용산구한남동일부	38,258㎡	"
고척구역	영등포구고척동일부	28,810㎡	(당초면적 28,123㎡)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고시제 129 호

사 방 지 의 지 정

사방사업법 제 3 조 동법시행령제 1
조 및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1. 사망지정지 내역서								
소 계 지			지 번	지 목	자 격	자 정 면 적	소 용 자 또는 점 유 자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서울	동대문	답십리	산 1-2	임야	0.9200	0.9200	종로경운 88	수상협동조합
"	"	성동	" 24-178	"	0.3300	0.3300	중구소공 116-1	합양회사
"	"	"	" 24-179	"	0.3300	0.3300	"	주식회용
"	"	"	" 24-180	"	0.4000	0.4000	"	"
"	"	가락	" 56-1	"	1.2400	1.2400	종로명물 3가 69-9	김 일 환
"	"	"	" 67-1	"	1.1500	1.1500	원주중앙동 143	최 건 구
"	"	"	" 67-2	"	0.6400	0.6400	종로종로 4가 104	김 영 거
"	"	"	" 75-5	"	2.4900	2.4900	서대문북아현 137-5	동원경석중
"	"	"	" 76-1	"	7.2700	2.500	"	"
"	"	"	" 77-1	"	2.3900	2.3900	"	"
"	"	오금	" 19-9	"	0.2600	0.2600	성동문정 341	윤 의 용 인
"	"	"	" 19-10	"	0.3100	0.3100	"	"
"	"	"	" 11	"	0.5500	0.5500	" 28	전 필 수
"	"	"	" 10	"	0.9000	0.9000	중구남산 2가 48	정 원 석
"	"	"	" 29-3	"	1.0315	1.0315	종로명물 1가 5-33	조 석 래
"	"	"	" 30-1	"	2.0000	2.0000	용산이태원 358-47	오 춘 모
"	"	"	" 33-1	"	4.5300	0.5000	상복성북 120	조 양 래
"	"	"	" 4	"	1.8500	1.8500	성동행당 122-14	백 세 준
"	"	방이	" 26-1	"	0.8500	0.8500	성동성수 2가 340	이 의 점 인
"	"	"	" 27	"	0.1200	0.1200	동대문창신 430	임 동 욱
"	"	"	" 36-3	"	1.7100	1.7100	성동상왕십리 762	설 후 삼 업 사
"	"	"	" 37-1	"	0.3500	0.3500	중구남대문 3가 110	한국의환은행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	
시	구	동					주 소	성 명
서울	성동	밤이	산 55-1	임야	0.8900	0.8900	성동송과	김한유
"	"	"	" 61	"	0.2500	0.2500	마포아현 619-19	이학우
"	"	"	" 47-4	"	0.3300	0.3300	종로공평 5-1	대구서석사 가공의중중
"	"	"	" 47-1	"	2.7000	2.7000	"	"
"	"	"	" 47-3	"	0.7700	0.7700	"	"
"	"	"	" 78	"	2.6000	2.6000	"	서울시
"	"	"	" 87-1	"	0.8200	0.8200	종로신문 2가 1-104	김택
"	"	"	" 87-2	"	0.5600	0.5600	성동가락 154	경주이씨 계공의중중
"	"	"	" 77	"	0.8300	0.8300	서대문북아현 137-51	동래정씨 창공의중중
"	"	"	" 94	"	0.7400	0.7400	"	오희남
"	"	"	" 84-2	"	0.9200	0.9200	성동밤이 354	김원배
"	"	"	" 96	"	0.5300	0.5300	성동석촌 115	이창우
"	"	"	" 118-3	"	0.3310	0.3310	경기여주가남	구자인
"	"	"	" 118-4	"	0.6800	0.6800	"	"
"	"	거여	" 23-9	"	0.3100	0.3100	성동오금 590	서봉운
"	"	"	" 26	"	6.6800	1.0000	강화강화관철 667	유덕현의인
"	"	마천	" 2	"	3.4900	3.4900	이천울면북두리	안재순 장열
"	"	"	" 8	"	0.3700	0.3700	성동둔촌	구자승의인
"	"	"	" 13-1	"	2.0300	2.0300	성동마천 165	구구열 은목
"	"	"	" 12-1	"	0.5100	0.5100	중구율지 5가 270-7	황국중
"	"	"	" 15	"	0.3000	0.3000	성동둔촌동	구자승의인
"	"	암사	" 64-1	"	2.0800	2.0800	성동암사 450-3	오수안
"	"	"	" 63-2	"	0.3100	0.3100	성동암사 444	이창남
"	"	"	" 34	"	0.7700	0.7700	동대문회기동 103-100	백재음의인
"	"	"	" 19-1	"	1.4800	1.4800	서대문북아현 123-31	임형빙
"	"	"	" 24	"	0.7900	0.7900	종로신교 6-21	엄경섭

소 계 지				지 목 지	지 점 면 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서울	성 동	암 사	산 25-1	임 야	1,1400	1,1400	국 유
"	"	"	" 28-	"	0,5400	0,5400	마포 마포 35 장 석 호
"	"	"	" 27	"	0,7100	0,7100	성동 남장 133 김 승 대
"	"	"	" 26	"	1,4100	1,4100	마포 동교 147-34 김 형 락
"	"	"	" 130-1	"	0,5401	0,5401	성북 성북 120 김 종 화
"	"	반 포	" 27-4	"	4,5620	4,5620	종로 명륜1가 29 조 식 태
"	"	"	" 28	"	1,8600	1,8600	" "
"	"	"	" 29	"	0,4800	0,4800	서대문 전동 34-7 조 봉 구
"	"	"	" 30	"	0,6200	0,6200	종로 명륜1가 29 조 식 태
"	"	"	" 39	"	0,4600	0,4600	서대문 북가좌 74-109 차 은 영
"	"	열 곡	" 3-1	"	0,8100	0,8100	중구 필동3가 27 박 수 용
"	"	"	" 3-4	"	1,6700	1,6700	" "
"	"	"	" 3-5	"	0,2300	0,2300	" "
"	"	"	" 3-6	"	0,1800	0,1800	" "
"	"	"	" 4	"	0,1400	0,1400	성동 열곡 105 박 완 수
"	"	"	" 5-1	"	2,0200	2,0200	성북 성북 63-44 황태일외1인
"	"	석 초	" 4-1	"	3,1210	3,1210	중구 장충1가 121 은 차 권
"	"	"	" 21-3	"	0,8403	0,8403	성북 동선3가 282-6 정 연 석
"	"	"	" 150-15	"	9,6900	9,6900	학교법인 해성간원
"	"	"	" 150-2	"	7,9500	7,9500	서대문 용정3가 185-1 강형국외2인
"	성 북	정 암	" 16-1	"	1,1700	0,4000	중구 남대문1가 14 조동은밖
"	"	돈 암	" 1-13	"	0,4121	0,4000	성북 돈암 7-6 학교법인 서라벌학원
"	"	"	" 3-15	"	1,5805	0,7300	" "
"	"	"	" 3-17	"	0,7010	0,4000	" "
"	"	"	" 85-1	"	4,9300	1,1200	성북 돈암 산 85 흥 산 사

소 재 지				지 목 지	지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서울	성북	종암산	2-62	임야	1,1400	0,8000		국세청
"	"	성북	" 25-52	"	2,7000	0,7000		산림청
"	"	석관	" 1-49	"	5,1700	0,8000		문화재관리국
"	"	하월곡	" 2-11	"	23,8600	23,8600	서대문 점동 34	재단법인 백제학원
"	"	"	" 2-36	"	3,3310	3,3310		문화재관리국
"	"	둔암	" 85-8	"	0,0922	0,6922	성북 둔암 산 85	홍천사
"	"	"	" 85-6	"	0,3316	0,3316	"	"
"	"	"	" 86-1	"	0,7100	0,7100	성동 신당 372-84	김재운
"	도봉	공릉	" 196-1	"	0,2213	0,2213	도봉 공릉 283	송영열
"	"	"	" 199-2	"	0,6800	0,6800	종로 종로고가 84	이석기외인
"	"	"	" 204-2	"	0,3000	0,3000		서울농협
"	"	도봉	" 1-3	"	0,1400	0,1400	경기 의정부 장암 98	윤한성
"	"	"	" 1-5	"	0,2000	0,2000	"	"
"	서대문	응암	" 1-27	"	1,6222	1,6222	종로 예지 131	신용욱
"	"	홍은	" 1-94	"	2,0115	2,0115		국유
"	"	"	" 1-8	"	1,1400	1,1400		"
"	"	"	" 1-180	"	1,1525	1,1525		"
"	"	북원	" 2-8	"	0,2110	0,2110		"
"	"	"	" 2-1	"	0,7900	0,7900	중구 을지1가 130-1	해동용업공사
"	"	"	" 2-2	"	1,7122	1,7122	"	"
"	"	진관	" 87-1	"	4,5200	4,5200	개성 부동 본점 466	오영석
"	"	"	" 87-5	"	0,7100	0,7100	서대문 진관 350	이용희외3인
"	"	"	" 95	"	4,4500	4,4500	영동포 영동 94-15	구본협
"	"	"	" 96-1	"	1,2200	1,2200	경성부소적정 142	이장용
"	"	삼암	" 3	"	0,5500	0,5500	성동 신당 309	박삼열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서울	서대문	상암	산 4-11	임야	0.4329	0.4339		국세청
"	"	"	" 4-14	"	1.7429	1.7429		"
"	"	"	" 4-15	"	0.5914	0.5914		"
"	"	"	" 4-23	"	1.8203	1.8203	성동 신당 253-60	홍수향
"	"	"	" 4-24	"	1.8911	1.8911		국세청
"	"	성산	" 16	"	0.5200	0.5200	서대문 성산 228	최권규
"	"	"	" 50-1	"	0.8020	0.8020	용산 청파3가 118-28	박필운
"	"	"	" 50-2	"	0.3319	0.3319	중구 소공동 116-1	서울은행
"	"	"	" 51	"	0.6650	0.6600	서대문 성산 254-1	김성만
"	"	중산	" 8	"	0.0900	0.0900	경성부수하점	김희석
"	"	"	" 24-7	"	0.8800	0.8800	마포 창전 34-2	윤전기외인
"	"	"	" 24-9	"	1.0200	1.0200	중구 남대문1가 14	주식회사 조흥은행
"	"	"	" 24-10	"	0.6027	0.6027	종로 배화 15-7	윤장섭
"	"	"	" 24-11	"	0.1104	0.1104	서대문 증산 13-11	최기남
"	"	"	" 24-15	"	0.9100	0.9100	"	"
"	"	"	" 25-1	"	0.4219	0.4219	동대문 용두 238	오학은
"	"	"	" 25-2	"	0.1000	0.1000	서대문 대현 4-6	박경애
"	"	"	" 25-8	"	0.0608	0.0608	서대문 북이현 125-20	김만선
"	"	"	" 26	"	1.3100	1.3100	종로 배화 15-7	윤장섭
"	"	수색	" 10-1	"	0.3420	0.3420	용산 한강1가 148	윤용원
"	"	"	" 11-1	"	0.3800	0.3800	성동 용은 542	전금희
"	"	"	" 34	"	0.2400	0.2400	중구 소공 116-1	주식회사 서울은행
"	"	중동	" 6-5	"	0.9900	0.9900	서대문 북이현 123-7	김윤식
"	임동포	오류	" 39-18	"	0.1000	0.1000	중구 판동2가 78-6	김혁덕
"	"	"	" 39-19	"	0.1000	0.1000	중구 을지3가 103	이우

소재지				지목지	적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서울	영등포	오류	산 39-20	임야	0.0800	0.0800	성북 인암5가 104-42 이원배
"	"	"	" 39-21	"	0.1300	0.1300	용산 효창6 김익
"	"	항	" 53	"	0.4700	0.4700	영등포 항동산 8-1 이상훈
"	"	"	" 52-1	"	1.4200	1.4200	중구 필동 124-6 박현일
"	"	"	" 54-3	"	1.6600	1.6600	부천 소래 옥련리산 103 경기화학
"	"	"	" 55-1	"	1.2200	1.2200	" "
"	"	"	" 34-2	"	2.0800	2.0800	서대문 창천 31-62 정순만
"	"	"	" 34-3	"	0.0300	0.0300	영등포 항동 137 김영찬
"	"	"	" 34-4	"	0.1300	0.1300	" 138 김효택외2인
"	"	"	" 34-6	"	0.3300	0.3300	서대문 창천 31-62 정순만
"	"	"	" 34-8	"	1.3400	1.3400	용산 용산2가 산2 박정태
"	"	"	" 35	"	1.3400	1.3400	중구 다동 67 이천식
"	"	"	" 31-1	"	1.9000	1.9000	영등포 항동 87 김민태
"	"	"	" 27	"	0.4500	0.4500	용산 청파1가 69-15 이정석
"	"	"	" 26	"	0.4500	0.4500	영등포 학동 5-1 이상훈
"	"	중	" 12	"	1.1600	1.1600	부천 삼곡리 43-1 이은상
"	"	"	" 14-8	"	2.6600	2.6600	종로 사직 80-3 김배영외1인
"	"	"	" 18-7	"	1.3600	1.3600	서대문 북아현 1-120 윤나환
"	"	천왕	" 19-1	"	2.5300	2.5300	영등포 오류 바-26 한경택
"	"	고척	" 50-1	"	0.2000	0.2000	중구 도동 21-9 대한보주식
"	"	"	" 58-6	"	0.4600	0.4600	" "
"	"	"	" 51-1	"	0.8700	0.8700	성북 삼선5가 299 송영수
"	"	독산	" 9	"	1.5100	1.5100	서대문 교북 108-4 이현부
"	"	"	" 8	"	3.6000	3.6000	성북 삼선3가 29-81 윤인상
"	"	"	" 110	"	1.6500	1.6500	성동 신당 45-22 안창일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소	상명
서울	영등포	목산	산 204-14	임야	0.4000	0.4000	영등포 여의도 1-45	오백현
"	"	"	" 204-13	"	0.4000	0.4000	동대문 면목 281-16	주명재
"	"	"	" 204-12	"	0.4000	0.4000	" 342-8	김명덕
"	"	"	" 204-11	"	0.4000	0.4000	서대문 용재 278-20	유봉석
"	"	"	" 204-10	"	0.2600	0.2600	마포 하수 85-15	김경우외 7인
"	"	"	" 204-9	"	0.1600	0.1600	"	"
"	"	"	" 204-7	"	0.1600	0.1600	"	"
"	"	"	" 204-6	"	0.5310	0.5310	여수시 중앙 72	윤선자
"	"	"	" 204-6	"	0.5000	0.5000	마포 하수 85-15	김경우외 7인
"	"	"	" 204-5	"	0.5000	0.5000	"	"
"	"	"	" 204-4	"	0.0120	0.0120	"	"
"	"	"	" 204-1	"	0.0810	0.0810	"	"
"	"	"	" 204-2	"	0.0400	0.0400	영등포 구로 454-46	홍재문
"	"	"	" 4-3	"	0.1123	0.1123	마포 서교 295-6	장치혁
"	"	"	" 5	"	1.1500	1.1500	중 증림 162	박윤순외 2인
"	"	시 용	" 100-8	"	1.9100	1.9100	중로 대평 3가 28	주철유공외 3인 대지조성위원회
"	"	"	" 100-7	"	2.5617	2.5617	중 필동 3가 79	중철영외 1인
"	"	"	" 100-5	"	2.2502	2.2502	"	"
"	"	"	" 6-2	"	33.6129	33.6129	영등포 영등포 1가 90	장유동
"	"	"	" 44	"	0.9502	0.9502	중구 을지 1가 3	한일부동산 주식회사
"	"	"	" 39	"	0.2904	0.2904	원악 북석 241-85	우명전
"	"	"	" 34	"	1.3400	1.3400	중구 을지 1가 3	한일부동산 주식회사
"	"	"	" 40	"	0.6400	0.6400	"	"
"	"	"	" 38	"	1.2300	1.2300	"	"
"	"	"	" 41-1	"	1.3100	1.3100	"	"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시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서울	영등포	시흥	산 04-1	임 야	6,0510	6,0510	관악 후석 64-24	장 정 호
"	"	"	" 19-4	"	1,0100	1,0100	서대문 녹번 24-18	김진석외17인
"	관악	봉천	" 133	"	4,4900	4,4900	관악 노량진	김창희외30인
"	"	"	" 98-5	"	1,3300	1,3300		국 유
"	"	신림	" 190	"	0,2500	0,2500	동대문 용두	정원영외1인
"	"	"	" 124-2	"	2,1100	0,6100	중구 필동 3 가 28-9	최 성 순
"	"	"	" 182-1	"	0,1500	0,1500		국 유
"	"	"	" 181-2	"	1,6620	1,6620	용산 한강 2 가 147	신흥물산 추석회사
"	"	방배	" 102-2	"	2,321	2,3216	관악 방배 102-2	한 무 영
"	"	"	" 84-1	"	1,5200	1,5200	" 615-318	유 희 동
"	"	"	" 85	"	2,3600	2,3600	관악 노량진 247-23	유 창 무
"	"	"	" 86	"	1,0100	1,0100	용산 후암 55-6	임 광 수
"	"	"	" 87-1	"	2,1700	2,1700	"	"
"	"	"	" 38-1	"	0,2000	0,2000	중 장충 171-102	이 용 수
"	"	"	" 92-1	"	4,1320	4,1320	"	"
"	"	"	" 35-1	"	0,7300	0,7300	용산 후암 55-6	임 광 수
"	"	"	" 34	"	74,5900	74,5900	성북 돈암 38-34	사 단 법 인 사 청 현 사
"	"	사당	" 97-3	"	0,3905	0,3905	관악 후석 49-26	김갑순외1인
계				191필	373,7303	344,2827		

◎ 서울특별시고시제 130 호

도시계획시설(광장및도로)지적승인
및 지적 일부분 변경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광장및
도로)을 다음과같이 지적승인 및 일
부분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
가. 광장지적승인조서

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구분	광장번호	광 장 명	면 적	비 고
신설	34	공군사관학교일	3,930㎡	

나. 도로지적 일부분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	26	25	9,000	한강로 3가	행당동광장	용산동 6 가지내일
변경	"	"	26	"	9,000	"	"	부위치변경
기정	대로	3	48	"	4,800	대 방 동	신 립 동	공군본부부문앞위
변경	"	"	48	"	4,800	"	"	치일부분변경

별첨 : 도면포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분
변경 및 지적 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분변경 및 지적승인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9. 9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m	60m	사당동 128-4	사당동 128-1 앞	위치변경
변경	"	3		6	60	사당동 128-19	"	
기정	"	4		4	53	청파동 2가 10-95	청파동 2가 9-24	위치변경
변경	"	4		4	43	"	" 9-2	

별첨 : 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2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 145호 (74.5.13)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승인의 9개 구역중 1974년도 사업시행 구역인 북아현제 2구역, 서빙고제 1구역, 고척구역 및 아현제 2구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제 41조 및 건설부 고시제 302호 (74.9.6)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하고 동법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량 2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고 시 내 역

가. 사업명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구역명	종 류	위 치	규 모	비 고
북아현제 2구역	주택개량을 위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84 ㎡	
아현제 2구역	재개발사업	마포구 아현동	17,857 ㎡	
서빙고제 1구역	"	용산구 서빙고동	12,343 ㎡	
고척구역	"	영등포 고척동	29,606 ㎡	

3. 관계도서생략

1974. 9. 10

서울특별시장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70 호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1.역촌,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 또는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3. 서류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될것이나 송달받지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

첨부:조서,도면(생략)끝

1974. 8. 3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71 호

환지예정지일부계획변경공고

1.방우수가(70.11.30 서공 244 호) 및 화양수가(73. 8. 27 서공 163 호)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한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변경계획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동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이 변경 통보는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4. 8. 3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 17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대체지정및지정번호변경공고
 당시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기업체명
 과 소재지변경 및 대표자변경, 지정번호
 변경사항을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
 고한다.
 1974. 9.
 서울특별시장

1. 대체지정업체

지정위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
802	신용물산 (주)	용산한강2 147	정두현	봉제품 (가방)	802	신용물산 주식회사	용산한강2 147	함현선	봉제품 (가방)
207	스완북장 기업사	중구오장 동 69-2	장지덕	Y샤스	415	스완산업 주식회사	성동성수2 289-49	장지덕	Y샤스
1014	동광섬유 공업(주)	도봉구미 아동317-1	최병규	피복	1014	동광섬유 공업(주)	도봉미아 동 317-1	고윤석	피복

2. 지정번호 변경업체

당초지정번호	변경된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비고
4002	1209	유나봉상(주)	신찬문	성동암사동 520-25	세타/홀치기	원호출장소
1029	508	신양편물공업사	임광준	성북정능동 432-2	세타	
508	1029	대성전선(주)	한정훈	도봉미아동 61-3	나동선	

사 업 계 획 서

1. 기 업 체 개 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개 지	본 사					업 종	
	공 장					생 산 품 명	
	기 타					창 립 년 월 일	
종업원수	(년 월 일 현재)					총자산액	(년 월 일 현재)
구 분	상 시	임 시		계		유 동 자 산	
	남	여	남	여	남		
사 무 직						고 정 자 산	
기 술 직						기 타	
기 타						계	
계						조 합 가 입 명	

2. 사 업 개 요 (기 업 체 연 령 및 일 반 사 항)

3. 생 산 공 정 도 (별 첨)

4. 생산능력 및 생산량조사표 (1년분)

품명	구	단위	생산능력		생산 및 판매 실적						
			수량	단위	197 년 도						
					생 산		국내 판매		국외 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원

5. 생산 및 판매 실적 (1년분)

품명	구	단위	197 년 도					
			생 산			판 매		
			수량	금액	국내 판매		국외 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원	

(첨부된 수출실적 증명서 일치시켰것)

7. 기타 특기사항

1974. 월 일

신청인 주소

업 제 명

대 표 자

⑤

※ 첨부서류 :

1. 영업감찰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1부
3. 섬유류 생산업체 섬유시설 등록증 1부
4. 수출실적 확인서류 (가, 나, 다중 하나만 선택)
 - 가. 외국환은행발행 수출대금 및 입금증명서 1부
 - 나. 세관발행 수출완료증명서 1부
 - 다. 세무서발행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면세증명서 1부
5. 수출계획 확인서류 (가, 나중 하나만 선택)
 - 가. 수출신용장 1부
 - 나. 수출계약서 및 주문서 (해외공판장 확인분) 1부
6. 기타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각 서

금번 폐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귀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때에는 귀시의 지정 취소조치는 물론 기타 여하한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이를 하등의 이의없이 감수하겠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준 수 사 항

가.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대책 지정신청을 한다.

- 1) 개인이 법인이 되거나 법인이 개인이 되는 경우
- 2) 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업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3) 업체를 양도하거나 이전한 경우
- 4) 생산품을 변경하는 경우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 1)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2) 수출을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3)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다. 매월의 사업계획에 실적보고서(수출상황보고서) 생산동태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라. 매년 12.10까지 익년도 수출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마. 기타 각종 행정지시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한다.

1974.

업적소계지 :

업적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공고제 177 호

기존재개발사업지구무효공고

1.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14 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내 도동 재개발사업지구(건설부

고시 제 155 호. 68.3.14)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 31 조의 규정에 저촉

되어 무효임으로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74. 9. 4

서울특별시장

내 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도 동 지 구	중구 도동 1 가 및 양동 일부 지역	4,144 명	도면생략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사 령

○ 1974. 8. 26

관악구 지방행정사 이철수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이두기
수도사업소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최궁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마포구 지방행정사 송중철
수도사업소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물산구 지방행정사 유인배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6월에 처함.

부직을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조병규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최창호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조병수
서기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양창동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최재봉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사 배환갑
수도사업소 서기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 사업소 지방행정사 김원제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p>아 동 병 원 지방행정 김한영 주 서 사</p>	<p>○ 1974. 8.28</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서울특별시 지방부 안찬희 이 사 관</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김흥기 수도사업소 서기보</p>	<p>구방대학원입교 (74.9.2- 75.7.12) 를 명함. 성북구 지과 지방농림 이현 장 직무대리 기 사</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양광석 수도사업소 서기보</p>	<p>관악구 지방지 권 문연송 원</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전규병 수도사업소 서기보</p>	<p>용산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지 권 김성경 기 원 보</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송희문 서기보</p>	<p>성동구 근무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 목 황의찬 사</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김대진 서기보</p>	<p>공원과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토 목 강희진 기 원</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항 1,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지방공무원법제 69조 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p>

<p>관악구 농기사보 국가공무원법제 78 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월에 처함.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신과 지방건설 지하철 파견근무 해제함.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국립대학원입교 (74. 9. 2- 75. 7. 12) 불 명함.</p>	<p>유기복 박남준 이인제</p>	<p>서대문구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지방행정기 성동사업소지방행정기 성동사업소지방행정기 영등포구지방행정기 동대문구지방행정기 서대문구지방행정기</p> <p>주용현 황철성 이충하 강성훈 박종암 홍심무</p>
<p>1974년 8월 28일 대통령령</p>		<p>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 1974. 8. 30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지사기 지하철본부 운수과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지방행정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p>
<p>○ 1974. 8. 29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사 서대문구지방행정기 성동구지방행정기 영등포구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지방행정기 아동보호소지방행정기 동대문구지방행정기 서대문구지방행정기 수도사업소지방행정기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p>	<p>김한영 이원경 임종순 강현태 김영 이현목 김영출 채석원 최영두</p>	<p>관악구지방행정사 보진소주방행정사 성북구근무를 명함. 성동구지방행정기 지방공무원법제 69 조제 1항 1, 2 호 규정에 의거 전제에 처함. 천호출장소 시민과장에 보함. 동대문구지방행정사 인사 292-2025(74. 8. 26 자 경제처분 발령제 736 호) 등</p> <p>박윤훈 두봉기</p>

전보부서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4. 9. 1

지방의 무기과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 영 석

마포구보건소보건지도과장에 포함

중 구 지방농림사 실 현 영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사보 정 경 자

경찰구 파견근무를 명함.

한강지막토목 유 재 길
건설사업소 기 원

도봉구 파견근무를 명함.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김병섭	감사담당관실	3	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심상용	영동출장소	5	"	영동출장소	"
유근박	관재과	3	"	관재과	"
장유식	사회과	6	"	사회과	"
염무실	운수1과	5	"	운수1과	"
이정복	중로구	5	"	중로구	"
송규석	중구	8	"	중구	"
김소구	성동구	12	"	성동구	"
김동철	서대문구	6	"	서대문구	"
김봉준	마포구	6	"	마포구	"
김차경	용산구	7	"	용산구	"
홍부한	영동출장소	9	"	영동출장소	"
서진홍	은평출장소	3	"	은평출장소	"
김종원	양서출장소	8	"	양서출장소	"
남해균	서대문병원	3	"	서대문병원	"
황재린	관악수도	4	"	관악수도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신동식	안전담당관실	6	지방행정주사	안전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용덕	인사과	5	"	인사과	"
김관희	"	3	"	"	"
김백식	세정과	8	"	세정과	"
박순원	"	7	"	"	"
박종청	"	3	"	"	"
최재후	아동과	4	"	아동과	"
전대식	관외과	3	"	관외과	"
민병철	연로과	9	"	연로과	"
김석봉	"	5	"	"	"
임생규	주택행정과	3	"	주택행정과	"
김의권	운수 1과	3	"	운수 1과	"
김차중	운수 2과	4	"	운수 2과	"
최윤호	운수 3과	5	"	운수 3과	"
임원택	"	5	"	"	"
민성기	중로구	4	"	중로구	"
유자관	"	4	"	"	"
윤종희	중구	8	"	중구	"
심권재	중구	8	"	중구	"
김충실	중구	8	"	중구	"
김성배	중구	3	"	중구	"
김규일	성동구	4	"	성동구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호봉	직급	
인준식	성동구	3	지방행정주사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김환모	성북구	3	"		성북구		"	
하태종	"	4	"		"		"	
김형구	"	4	"		"		"	
박주환	도봉구	3	"		도봉구		"	
조학래	"	3	"		"		"	
김용제	서대문구	10	"		서대문구		"	
고광휴	"	10	"		"		"	
서병승	마포구	4	"		마포구		"	
이사영	"	6	"		"		"	
이영우	용산구	6	"		용산구		"	
권오섭	"	9	"		"		"	
조승찬	"	5	"		"		"	
장중섭	"	8	"		"		"	
김창원	영등포구	6	"		영등포구		"	
박세근	관악구	6	"		관악구		"	
한상영	천호출장소	4	"		천호출장소		"	
민윤식	은평출장소	4	"		은평출장소		"	
정운효	"	4	"		"		"	
오형진	양서출장소	6	"		양서출장소		"	
최남규	아동병원	6	"		아동병원		"	
윤병여	동부병원	3	"		동부병원		"	

성 명	발 명 사 합			현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이재삼	중 부 별 원	3	지방행정주사	중 부 별 원	지방행정주사보
주도기	선 동 수 도	5	"	선 동 구 수 도	"
김명기	동 대 문 수 도	12	"	동대문구수도	"
이남재	자 동 차 정 비 창	6	"	자 동 차 정 비 창	"
이삼봉	자 동 차 운 수 사업 소	3	"	자 동 차 운 수	"
조만형	시 민 과	4	지방행정주사보	시 민 과	지방행정서기
김영배	중 로 구	6	"	중 로 구	"
성중모	"	9	"	"	"
이석규	중 구	5	"	중 구	"
정현식	동 대 문 구	5	"	동 대 문 구	"
이희순	"	5	"	"	"
원봉재	성 동 구	7	"	성 동 구	"
김성환	도 봉 구	7	"	도 봉 구	"
홍순배	"	5	"	"	"
신극균	시 대 문 구	9	"	시 대 문 구	"
이종실	마 포 구	12	"	마 포 구	"
최중집	"	6	"	"	"
이경수	용 산 구	5	"	용 산 구	"
정치환	"	5	"	"	"
안명석	영 동 포 구	8	"	영 동 포 구	"
평완수	"	5	"	"	"
김봉우	관 악 구	12	"	관 악 구	"

성 명	발령 사항			현 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강승희	관악구	12	지방행정주사보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한덕상	영동출장소	9	"	영동출장소	"
송병석	은평출장소	8	"	은평출장소	"
윤완	"	12	"	"	"
장시찬	양서출장소	10	"	양서출장소	"
양사승	도봉구	7	"	도봉구	"
배한승	대방부도보호소	5	"	대방부도보호소	"
이세명	남산공무원관소	9	"	남산공무원관소	"
이학성	중기관리사업소	12	"	중기관리사업소	"
이상훈	총무과	3	"	총무과	"
이재완	인사과	5	"	인사과	"
김병한	"	2	"	"	"
박준일	시정개발담당	4	"	시정개발담당	"
류영국	중로구	6	"	중로구	"
조규만	"	7	"	"	"
한학선	"	7	"	"	"
김명덕	"	5	"	"	"
장용원	"	5	"	"	"
김용선	"	3	"	"	"
이공수	"	3	"	"	"
점갑수	중구	7	"	중구	"
박대환	중구	5	"	중구	"

성 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김정수	중 구	6	지방행정주사보	중 구	지방행정서기
이창복	동대문구	5	"	동대문구	"
고석창	"	5	"	"	"
고순철	"	9	"	"	"
최광순	"	5	"	"	"
김용찬	"	3	"	"	"
이철용	"	5	"	"	"
조정환	중 구	5	"	중 구	"
정우진	성동구	6	"	성동구	"
산석근	성북구	5	"	성북구	"
조민환	"	6	"	"	"
김길대	"	3	"	"	"
유동균	"	5	"	"	"
조한식	"	3	"	"	"
오정선	"	3	"	"	"
정수현	도봉구	5	"	도봉구	"
김영길	"	6	"	"	"
우순재	"	5	"	"	"
이창문	"	3	"	"	"
이병진	서대문구	8	"	서대문구	"
정택구	"	5	"	"	"
박금용	"	4	"	"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호 봉	직 급	부 서	직 급
장성동	서 대 문 구	5	지방행정주사보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서기
구원회	마 포 구	6	"	마 포 구	"
이준석	용 산 구	3	"	용 산 구	"
유양범	"	7	"	"	"
이종영	"	3	"	"	"
손인목	"	3	"	"	"
박용만	"	5	"	"	"
박준상	"	5	"	"	"
김성수	영 동 포 구	5	"	영 동 포 구	"
이광옥	"	9	"	"	"
김기종	"	4	"	"	"
곽명신	"	5	"	"	"
박승재	"	4	"	"	"
조봉원	"	5	"	"	"
유석형	"	5	"	"	"
최이현	"	4	"	"	"
박종대	"	5	"	"	"
박재진	관 약 구	5	"	관 약 구	"
정태영	"	5	"	"	"
박상현	"	3	"	"	"
김기정	"	3	"	"	"
이몽수	"	3	"	"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박정노	천호출장소	3	지방행정주사보	천호출장소	지방행정서기
유영내	양서출장소	4	"	양서출장소	"
박금동	종로구수도	3	"	종로구수도	"
최종순	"	9	"	"	"
이주영	동대문수도	4	"	동대문수도	"
한상은	성동수도	6	"	성동수도	"
윤석춘	성북수도	5	"	성북수도	"
백승균	"	8	"	"	"
김인영	도봉수도	4	"	도봉수도	"
이유행	서대문수도	8	"	서대문수도	"
권승만	"	9	"	"	"
이용주	용산수도	3	"	용산수도	"
김현규	"	5	"	"	"
김삼수	영등포수도	5	"	영등포수도	"
남관희	"	6	"	"	"
황영용	관악구수도	6	"	관악구수도	"
최정태	도시가스사업소	5	"	도시가스	"
박용주	동부건설사업소	7	"	동부건설	"
박석용	"	3	"	"	"
서재학	자동차운수사업소	6	"	자동차운수사업소	"
방종춘	종로구	3	지방행정서기	종로구	"
양순중	"	5	"	"	"

성명	발명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정수진	총로구	2	지방행정서기	총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조종학	중구	5	"	중구	"
최석근	"	4	"	"	"
입돈식	"	6	"	"	"
김성근	"	11	"	"	"
윤성국	동대문구	4	"	동대문구	"
정동화	"	4	"	"	"
이병택	"	5	"	"	"
장부환	"	3	"	"	"
강문정	"	6	"	"	"
이도빈	"	2	"	"	"
박현명	성동구	9	"	성동구	"
김기호	"	2	"	"	"
조창호	"	9	"	"	"
김경준	"	3	"	"	"
박승태	성북구	6	"	성북구	"
라지찬	"	2	"	"	"
이혁구	"	3	"	"	"
송재문	"	4	"	"	"
오철현	도봉구	4	"	도봉구	"
안홍양	"	2	"	"	"
최현구	"	2	"	"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김철희	서대문구	4	지방행정서기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행락	"	4	"	"	"
이안기	"	5	"	"	"
우달제	"	10	"	"	"
임박문	"	2	"	"	"
이홍우	마포구	5	"	마포구	"
유진섭	"	2	"	"	"
이동환	용산구	4	"	용산구	"
박수합	"	12	"	"	"
제정호	영등포구	6	"	영등포구	"
김종구	"	3	"	"	"
변형식	관악구	3	"	관악구	"
고동식	"	2	"	"	"
최현창	"	3	"	"	"
최준일	"	5	"	"	"
김공희	천호출장소	5	"	천호출장소	"
유천호	"	4	"	"	"
김용근	"	9	"	"	"
오세운	"	3	"	"	"
조연봉	임동출장소	10	"	임동출장소	"
박준호	은평출장소	5	"	은평출장소	"
김홍주	"	4	"	"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명진상	은명출장소	5	지방행정서기	은명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최기현	양서출장소	3	"	양서출장소	"
송경용	도봉구보건소	4	"	도봉구보건소	"
마기찬	북부녹지사업소	6	"	북부녹지사업소	"
사공근	서대문수도사업소	3	"	서대문수도사업소	"
강탁원	중구	5	"	중구	"
허창수	성동	3	"	성동	"
김화용	용산	7	"	용산	"
유세환	동대문	5	"	동대문	"
하홍선	시설관리과	2	"	시설관리과	"
최승걸	중로구	4	"	중로구	"
조학봉	"	5	"	"	"
김진기	"	4	"	"	"
윤일훈	"	6	"	"	"
임택용	"	4	"	"	"
박광수	"	4	"	"	"
황복삼	"	3	"	"	"
이두휴	중구	6	"	중구	"
최종삼	"	5	"	"	"
윤영희	"	3	"	"	"
박성길	"	4	"	"	"
이충우	"	3	"	"	"

성 명	발 명 사 함			원 칙	
	부	서	조봉	직	급
최수용	중	구	3	지방행정서기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한재관	"	"	3	"	"
김천규	"	"	3	"	"
이수성	"	"	3	"	"
정해식	"	"	3	"	"
김용기	"	"	4	"	"
유상근	"	"	3	"	"
김호흠	"	"	4	"	"
김대영	"	"	4	"	"
박정하	"	"	2	"	"
한정희	"	"	2	"	"
이정재	"	"	3	"	"
박기호	동	대	문	구	5
원영식	"	"	"	"	6
이준배	"	"	"	"	2
장재남	"	"	"	"	6
조희철	"	"	"	"	2
임병규	"	"	"	"	4
이충봉	"	"	"	"	4
김재형	"	"	"	"	4
김용남	"	"	"	"	11
정태일	"	"	"	"	2

성 명	발 행 사 항			현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박규식	동대문구	3	지방행정서기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윤필운	"	5	"	"	"
김홍수	"	5	"	"	"
강병채	"	2	"	"	"
최광덕	"	4	"	"	"
권희식	"	3	"	"	"
권오광	"	3	"	"	"
오창투	"	2	"	"	"
김증호	"	4	"	"	"
임승민	성동구	6	"	성동구	"
이은실	"	5	"	"	"
서중택	"	4	"	"	"
손유원	"	8	"	"	"
양석구	"	4	"	"	"
이지룡	"	6	"	"	"
황찬찬	"	3	"	"	"
권상현	"	2	"	"	"
지영구	"	4	"	"	"
김진수	"	3	"	"	"
조복호	"	5	"	"	"
황태성	"	3	"	"	"
박천환	"	3	"	"	"

성 명	발 명 사 항				원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김귀옥	성	동	구	3	지방행정서기	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규석	"	"	"	3	"	"
박천석	"	"	"	2	"	"
문제상	"	"	"	3	"	"
송효출	"	"	"	3	"	"
라재균	"	"	"	3	"	"
윤갑섭	"	"	"	2	"	"
송선경	"	"	"	2	"	"
서기상	"	"	"	2	"	"
남극노	성	북	구	3	"	성 북 구
유영호	"	"	"	2	"	"
조천취	"	"	"	4	"	"
김철수	"	"	"	3	"	"
배기영	"	"	"	2	"	"
장원석	"	"	"	2	"	"
남정록	"	"	"	4	"	"
박기웅	도	봉	구	4	"	도 봉 구
오세택	"	"	"	5	"	"
김대우	"	"	"	4	"	"
박상원	"	"	"	4	"	"
소개익	"	"	"	3	"	"
박영갑	"	"	"	4	"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이훈실	서대문구	5	지방행정서기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준기	"	5	"	"	"
정재언	"	3	"	"	"
유동규	"	3	"	"	"
이권철	"	3	"	"	"
조남현	"	4	"	"	"
김정배	"	2	"	"	"
유남호	"	2	"	"	"
강한수	마포구	4	"	마포구	"
윤승	"	6	"	"	"
김종극	"	3	"	"	"
한기정	"	6	"	"	"
진양원	"	4	"	"	"
정대용	"	3	"	"	"
윤경엽	"	3	"	"	"
윤경숙	"	3	"	"	"
김용광	용산구	7	"	용산구	"
조수완	"	2	"	"	"
장재관	"	6	"	"	"
이정희	영등포구	3	"	영등포구	"
이상권	"	6	"	"	"
권용선	"	2	"	"	"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호봉	직급	부서	직급
정원명	영등포구	2	지방행정서기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취수	"	5	"	"	"
전만수	"	3	"	"	"
박재현	"	4	"	"	"
강석원	"	3	"	"	"
박정기	"	2	"	"	"
김용규	관악구	5	"	관악구	"
신경철	"	7	"	"	"
최용환	"	3	"	"	"
조태혁	"	5	"	"	"
유근식	"	4	"	"	"
정윤호	"	3	"	"	"
최증국	"	2	"	"	"
노영래	"	3	"	"	"
신일근	천호출장소	4	"	천호출장소	"
김의효	"	4	"	"	"
서수원	"	4	"	"	"
김태중	"	4	"	"	"
김영준	"	3	"	"	"
강상도	"	2	"	"	"
황규식	영등출장소	3	"	영등출장소	"
이상길	"	4	"	"	"

성 명	발 명 사 함			권 칙 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유창진	영 동 출 장 소	2	지방행정서기	영 동 출 장 소	지방행정서기보
강장원	은평출장소	4	"	은평출장소	"
백의용	"	4	"	"	"
홍기	"	2	"	"	"
홍성한	"	3	"	"	"
민석기	"	3	"	"	"
고광순	양서출장소	3	"	양서출장소	"
서광태	종로구수도사업소	3	"	종로구수도사업소	"
이광순	"	5	"	"	"
이인표	동대문수도사업소	9	"	동대문수도사업소	"
박창열	"	9	"	"	"
이범동	"	4	"	"	"
조운영	"	8	"	"	"
홍태일	성 동수도사업소	3	"	성 동수도사업소	"
재영수	성 북수도사업소	4	"	성 북수도사업소	"
송영환	"	3	"	"	"
박상울	서대문수도사업소	3	"	서대문수도사업소	"
이성구	"	3	"	"	"
김지현	"	4	"	"	"
김길영	마 포수도사업소	3	"	마 포수도사업소	"
이기표	"	3	"	"	"
이종택	"	7	"	"	"

성 명	발령사황			원 직	
	부 서	호봉	직 급	부 서	직 급
장문학	마포수도사업소	4	지방행정서기	마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신민생	"	2	"	"	"
곽일찬	용산수도사업소	3	"	용산수도사업소	"
김병호	"	2	"	"	"
김태용	영등포수도사업소	4	"	영등포수도사업소	"
김경오	"	3	"	"	"
이성건	관악수도사업소	3	"	관악수도사업소	"
김홍현	"	3	"	"	"
강희덕	아동병원	3	"	아동병원	"
유인화	"	2	"	"	"
이재규	서대문병원	2	"	서대문병원	"
송인창	정신병원	2	"	정신병원	"
박종래	동대문근로자회관	2	"	동대문근로자회관	"
이경희	영등포	4	"	영등포	"
염동화	도시가스사업소	6	"	도시가스사업소	"
박승노	"	4	"	"	"
박민채	한강건설사업소	5	"	한강건설사업소	"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주	김상돈	성동구 지방행정 기	황천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연로과파견 근무를 명함.	
9 호봉을 급함.		시정개발 지방행정 담당관실 주사보	박준일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업무과파견 근무를 명함.	
양정 과 행정주사보	김제원		정오석
행정주사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1 호봉을 급함.	
양정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	김순호		안도영
행정주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1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부녀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가보	박재홍	가축시장 지방축산 기원	김동성
행정서기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3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지방축산 기원보	김동현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보	이홍열	천호출장소 지방축산 기원보	강현배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가축시장 근무를 명함.	
2 호봉을 급함.		성동구 지적기원보	최강섭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운수 3 과 지방행정 주	임원백	용산구 지적기원	김훈주
연로과파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출장소 지방행정 주	심상웅	동대문구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원보시보	백동현
공보실파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심복구 지방농림원	이용태	나병구
관악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임함.
관악구 지방농림원	이종수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 지방농림원	이성수	김대동
중로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농림원	김상태	
상복구 근무를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임함.
정신병원 지방보건원	전병홍	송인록
중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중구 지방농림원보시보	김재강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농림원보	최원순	김대성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임함.
대구시 지방악무원	신상구	
남구보건소 전입을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악무기원에 임함.		단속과 근무를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지방철도원 이필우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8등급급
	김기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지방기계기사보시보에 임함.		지방철도원 8등급에 임함.
1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p>◎ 1974. 9. 2</p> <p>기 전 과 지방기 계 환 경 과 기 사 보 지 방화 공 지 방화 공 기 기 원 보</p>	<p>충 청 남 도 지 방행 정 기 논 산 군 논 산 읍 서 기</p> <p>황 경 준</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지 방공 무원 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휴 직 을 명 함.</p> <p>경 상 북 도 지 사 구 자 춘 서울특별시장에 임함. 서울특별시감 양 태 식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전 라 남 도 지 방행 정 기 부 성 군 새 읍 과 서 기</p> <p>김 영 안</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성 동 구 근무를 명함.</p>
<p>1974. 9. 2.</p> <p>대 통 령</p>	<p>공 무 원 교 육 원 지 방행 정 교 학 과 사 무 관 시 보</p> <p>진 영 호</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1 호봉을 급함.</p>
<p>◎ 1974. 9. 3</p> <p>총 무 과 지 방비 서 관 (시장실) (3급을상당)</p> <p>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총 무 과 지 방비 서 관 (시장실) (3급을상당)</p> <p>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정 상 진</p> <p>공 무 원 교 육 원 교 학 과 시 도 제 장 에 보 함.</p> <p>동 대 문 구 지 방토 목 수 도 사 업 소 기사보 시 보</p> <p>최 인 호</p> <p>지 방공 무원 법 제 63 조 제 1 항 3 호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휴 직 을 명 함.</p>
<p>◎ 1974. 9. 5</p> <p>전 라 남 도 지 방행 정 강 진 군 성 전 면 서 기 보</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용 산 구 근무를 명함.</p>	<p>조 수 길</p> <p>◎ 1974. 9. 6</p> <p>단 속 과 지 방토 목 기사보 시 보</p> <p>김 대 성</p> <p>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공 무 원 교 육 원 교 수 부 행 정 사 무 관</p> <p>조 윤 재</p> <p>총 무 과 (시장실) 파견 근무를 해제함.</p>

<p>◎ 1974. 9. 7</p> <p>경 살 복 도 지 방 행 정 내 무 국 서 부 과 주</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행정주사에 입함.</p> <p>3 호봉을 급함.</p> <p>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p> <p>총 무 과 비 서 관 (시감실) (3급상당)</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소 병 회</p> <p>이 두 선</p> <p>유 순 선</p> <p>안 점 사</p>	<p>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 1974. 9. 10</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안 옥 회</p> <p>이 영 회</p> <p>송 암 선</p> <p>김 상 알</p>	<p>유 영 화</p> <p>주 연 강</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p> <p>1 호봉을 급함.</p> <p>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지방마시 (4간상당)에 입함.</p> <p>2 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내무국 총무과(시 감실) 근무를 명함.</p> <p>시 정 개 발 지 방 행 정 담 담 관 실 서</p> <p>부직을 명함.</p> <p>시정개발담담관실 근무를 명함.</p>

<p>경상북도 (3급 상당) 비서관 비서관 (3급 상당)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1974. 9. 10. 대 통 령 소 병 역 지방비서관 (3급 상당)에 임함. 1호봉을 급함.</p>	<p>총무과 (시장실)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 순병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4. 9. 15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박종호 1호봉을 급함. 공업과 근무를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